

1. 개정이유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그 지정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담인력의 자격 및 운용규모,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담인력의 자격 및 운용규모(안 제29조 신설)

- 1) 전담인력의 자격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사 등으로 함.
- 2) 전담인력의 도매시장법인별 운영규모를 연간 총 거래규모가 20만 톤 이상인 경우에는 경매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연간 총 거래규모별로 일정 수 이상으로 하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안 제39조의2 신설)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수수료 조정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권고할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다.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안 제52조의3)

-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부진평가의 기준을 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로 함.
- 2) 도매시장공판장의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취소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25. ~ 7.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합리화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제1항”으로, “지정조건”을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2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등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

28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의 운용 규모에 관한 사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전담인력의 자격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3. 그 밖에 정가매매·수의매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경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전담인력의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연간 총 거래규모가 20만톤 이상인 경우: 6명 이상
2.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인 경우: 3명 이상
3.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③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가매매·수의매매의 수요 발굴
2. 정가매매·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
3. 그 밖에 정가매매·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주 및 임원의 현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

2.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料率)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권고할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이하 이 항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표”를 “도매시장법인등에 통보 및 공표”로 한다.

제52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하고,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매시장법인등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인용 여부(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2조의3(종전의 제5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기간”을 “지정 또

는 재지정 유효기간”으로, “부진평가”를 “부진평가(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기간”을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최근 5년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해야 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0호 중 “제52조의2”를 “제52조의3”으로, “2017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매시장법인등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이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승인) 취소
2) 「축산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축산물을 상장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의2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 (승인) 취소
4)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5)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에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지정취소	—	—
7)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

8)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않거나 경매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9)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6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0)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1)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2) 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개월
13) 법 제3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0호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14)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1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5)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2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16)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된 사실을 공시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17)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8)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가) 1개월 무실적 나) 2개월 무실적 다) 3개월 무실적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주의 경고 지정취소		

라) 6개월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 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19)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4호	경고	지정취소	—
20)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5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21)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6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2)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7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3)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8호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24)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9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5)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대금결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0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6)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27)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2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28)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법 제82조제3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출하자 보호와 농수산물의 안정적 유통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82조 제3항	지정 (승인) 취소	—	—
2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3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30)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4호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31)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26호	지정(승인) 취소	—	—
32)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2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비고

「축산법」 제41조에 따른 처분 등의 요청권자가 일정 기간의 업무정지(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2)의 처분기준의 범위에서 그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나목1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2조”를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업무규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업무규정) ①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u>지정조건</u> 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 ----- ----- --- <u>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u> 등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u><신 설></u>	5의2.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u>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u> 등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
6. ~ 28. (생략)	6. ~ 28. (현행과 같음)
<u><신 설></u>	28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u>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의 운용규모에 관한 사항</u>
29. ~ 37. (생략)	29. ~ 3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 -----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② (생략)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전담인력의 자격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3. 그 밖에 정가매매·수의매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경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전담인력의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

는 도매시장법인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연간 총 거래규모가 20만톤 이상인 경우: 6명 이상

2.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인 경우: 3명 이상

3.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③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가매매·수의매매의 수요 발굴

2. 정가매매·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

3. 그 밖에 정가매매·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신 설>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1.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주 및 임원의 현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
2.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料率)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제39조의2(위탁수수료의 조정 권

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권고할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이하 이 항에서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① -

-----.

1. -----

-----이하 -----

다)에게 통보

2. 3. (생 략)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② 3 (생 략)

<신 설>

2. 3. (현행과 같음)

4. -----

도매시장법인등에 통보 및 공표

② 3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매시장법인등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인용 여부(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

통지해야 한다.

제52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등) ① -----

----- 취소해야 한다.

1. -----
-----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 부진평가(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
-----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

②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

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u>취소할 수 있다.</u> 제57조(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29. (생략) 30. <u>제52조의2</u>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u>2017년 1월 1일</u> 31. 삭제 32. (생략) ② (생략)	----- <u>취소해야 한다.</u> 제57조(규제의 재검토) ① ----- ----- ----- ----- ----- ----- ----- ----- 1. ~ 29. (현행과 같음) 30. <u>제52조의3</u>----- ----- <u>2027년 1월 1일</u> 3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